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11.10.] [대통령령 제28421호, 2017.11.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수리·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항공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871호, 2017. 8. 9. 공포, 11. 10. 시행)됨에 따라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421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62조제4항"을 각각 "법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법 제69조의2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별표 3 제2호의 위반행위란 타목1) 중 "법 제62조제3항"을 "법 제6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자목 중 "법 제62조제5항"을 "법 제62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카목 중 "법 제62조제3항"을 "법 제62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란의 타목 1)·2)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